

이 취득·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면제대상) 학교법인이 비행연습, 기기의 제작·조립·운전등 실험·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취득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등재산을 당해학교의 교육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.

제3조(면제신청등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·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불균일과세)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산중 농지(전·답·과수원)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을 세율을 적용한다.

다만, 19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.

제3조(경감신청)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·건물및 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·건물및 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4기봉”을 “2000씨씨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국가유공자에우동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(다만,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동 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 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. 이하 같다)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(2000씨씨 이하로서 1대에 한한다)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한다.

[별표]: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